

전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24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문승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2020. 8. 31.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0,344,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344,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2020. 8. 31.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5. 8. 5.경 유한회사 C와 전주 D건물 3층에 있는 E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중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중 5억 6,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 2) 원고는 2020. 3. 27. 유한회사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8069호로 남은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6. 16.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그 중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020. 4.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3) 유한회사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유한회사 C의 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강제집행실시

- 1) 유한회사 F(2018. 1. 16. 유한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어 등기되었다)는 2015. 5. 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 외 3필지 지상 D건물 2층 H호,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2015. 8. 16.~2020. 8. 16.), 월 차임 1,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유한회사 C는 2020. 8. 31. 피고와 사이에 이행각서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 8.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338,750,000원을 2020. 9.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이행각서를 공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C는 2020. 9. 9.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20년 제665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한회사 C의 29개 목록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경매를 실시하였고,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 31,380,000원 중 집행비용 1,035,600원을 공제한 30,344,400원을 피고의 유한회사 C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배당받았다.

다. 유한회사 C의 채무초과 상태

유한회사 C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유한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대표이사 K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유체동산호가경매를 통해 30,344,400원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유한회사 C의 요구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미지급 차임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하여 유한회사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사해행위의 대상은 채무자에 의한 소송행위가 아닌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유한회사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유한회사 C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유한회사 C가 피고와 사이에 기존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유한회사 C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즉, 유한회사 C가 피고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보면, 유한회사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유한회사 C는 피고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유한회사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9.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유한회사 C의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경매도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1. 10. 실시되었고,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유한회사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29개 목록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다. 즉, 원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직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유한회사 C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실시되었다.

②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K은 2015. 11. 4. 및 2017. 10. 26. 유한회사 F의 주주 L과 M로부터 그 보유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2018. 1. 26. 상호를 유한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K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법률혼 부부’ 사이인 피고와 유한회사 C를 대표한 K 사이에 이루어졌다.

③ 앞서 본 법리에서 거시한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은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거나(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같이 참가한 사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어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즉,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유한회사 C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유한회사 C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유한회사 C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위 법리와 같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받은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가 유한회사 C에 대하여 175,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한회사 C로부터 30,344,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관하여 1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적은 금액인 30,344,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일부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0,344,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